
Policy and Law Report _Vol.8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6.7 ~ 6.13) -

June 14,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 최근 철근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 ③ 상반기 투자·소비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대응, ④ 한걸음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⑤ 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등이 있음	2021-06-09											
	• 「제2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5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제2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청년 및 여성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대응방향, ② 대한민국 동행 세일 세무 준비 및 홍보계획, ③ 스마트 관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④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등이 있음	2021-06-11											
산업통상자원부	•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을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을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주요 내용으로는 ① 그간 외투기업에 제공되던 임대료 감면,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특전(인센티브)을 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분야 국내 투자기업으로 확대, ②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발전계획 수립, ③ 경제자유구역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등이 있음 < 인센티브 제공 주요 내용 > <table> <tr> <th colspan="2">대상기업</th><th rowspan="2">주요 내용</th></tr> <tr> <th>기존</th><th>추가</th></tr> <tr> <td>외투기업</td><td>(비수도권) 유턴기업,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td><td>-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 - 전용용지에 입주 허용</td></tr> <tr> <td>외투기업, 유턴기업</td><td>(비수도권)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td><td>- 국·공유지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매각 허용 - 국·공유지 임대 시 임대료 기준 재산가액의 1%, 100%까지 감면 가능 - 국·공유지 50년 이내 임대,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td></tr> </table>	대상기업		주요 내용	기존	추가	외투기업	(비수도권) 유턴기업,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 - 전용용지에 입주 허용	외투기업, 유턴기업	(비수도권)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 국·공유지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매각 허용 - 국·공유지 임대 시 임대료 기준 재산가액의 1%, 100%까지 감면 가능 - 국·공유지 50년 이내 임대,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2021-06-08
대상기업		주요 내용											
기존	추가												
외투기업	(비수도권) 유턴기업,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 조성원가 이하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 - 전용용지에 입주 허용											
외투기업, 유턴기업	(비수도권)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	- 국·공유지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매각 허용 - 국·공유지 임대 시 임대료 기준 재산가액의 1%, 100%까지 감면 가능 - 국·공유지 50년 이내 임대,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을 발표함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자동차 부품기업, 반도체, 백신·신약)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주요 내용> 1 미래차전환 플랫폼 구축 ① 권역별 지원플랫폼 구축을 통해 '30년까지 1,000개사 사업재편 지원 ② 공공연 연구인력, 완성차 퇴직인력 파견 등을 통해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 ③ 민간주도 “자율주행협회(가칭)” 설립 등 이중산업 협력의 장 구축 2 시장성장 분야로 사업모델 혁신 지원 ① 완성차사 신차개발 전략과 연계한 부품개발 지원, 중견3사 협력업체 특화 지원 ② 미래차 핵심부품 14종 기술자립 지원, 소재 국산화율 70→95%로 제고 ③ GP 센터 확대(5→7개), 미래차부품 무역보험 우대 등 신시장 개척 지원 3 사업재편 지원수단 확충 ① (기술) 후발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전용 R&D 신설 ② (자금) 설비투자금 저리 융자 검토, 미래차 투자펀드(5천억원) 조성 등 ③ (인력) '25년까지 1만명 미래차 인력 양성 ④ (공정) 스마트공장 '22년까지 10인 이상 사업장(4,200여개) 기준 70% 보급	2021-06-10

부처	내용	일시
보건 복지부	• 글로벌 재생의료 강국을 향한 범부처 실행 계획 확정 보건복지부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2021년 시행계획 등을 논의함 1. 2021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시행계획 주요내용 ◆ 안전관리체계 구축, 치료 접근성 개선 등 제도적 지원과제 본격 추진 - 첨단재생바이오 안전관리 강화 (총 14개 과제) - 임상연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장기추적조사 전산시스템 구축 - 규제과학 연구개발(이하 R&D) 지원 및 국가 R&D전담 컨설턴트 지정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접근성 확대 (총 8개 과제) - 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확대 - 재생의료 임상연구 R&D 지원(`21. 99억 원)을 위한 임상연구 지원 사업단 운영</li> </ol> </li> <li>기술 혁신을 위한 적극적·전략적 투자 확대 (총 20개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바이오의약품 생산·관리·유통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범용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추진 (`21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 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인허가 심사 연계* 추진 * 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 대상에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된 재생의료임상연구 결과로 의약품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법 개정 추진) - 재생의료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전략위원회 및 전략포럼’ 구성·운영 2.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재생의료 접근성 확대 논의 시작 ◆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가 어려운 희귀 또는 난치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 국내 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하여 정부-민간 사회적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논의체 구성 방식, 논의 주제 등은 관계부처, 환자단체, 전문가, 공익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	2021-06-04

부처	내용	일시
식품 의약품 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함 *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 이번 개정은 작년에 인삼, 홍삼, 클로렐라 등 고시형 원료 8종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개별성분별 시험법도 개정·신설 등 분석조건을 개선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능성 원료 8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②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 변경, ③ 클로렐라의 납 규격 강화, ④ 비타민 K의 원료 추가, ⑤ 카테킨·카페인 동시분석법 신설 등 분석조건 개선 등이 있음	2021-06-10
금융 위원회	•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동 고시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등을 위한 「보험업법」이 2020.12.8.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간 발표된 주요 정책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설정, ②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지급여력금액의 30%’로 상향, ③ 보험회사가 반기별로 공시해야하는 항목에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추가 등이 있음	2021-06-09
공정거래 위원회	•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함 이번에 개정된 반품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의 위법성 판단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하여 구체화하고,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품지침에 반영한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반품조건의 일반적 정의 규정 신설 ②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하여야 할 ‘반품조건’ 구체화, ③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 기준 보완, ④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 등이 있음 이번 개정으로 부당한 반품행위 관련 법 집행을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납품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2021-06-10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자산총액과 매출액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CISO는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열거된 업무를 총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급이라는 모호한 정의로 법 해석을 둘러싼 혼선이 있는 바 이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도록 위임하고,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기업의 CISO를 대표이사로 간주하여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정보보호 분야 발전을 고려하여 일부 업무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1항 및 제4항)	2021-06-08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자는 정보보호 투자, 인력현황 및 정보보호 관련 인증 등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하여, 정보보호의 공시를 사업자의 재량에 따른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패션 스타트업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의 정보보안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정보보호 현황공시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어가는데, 2020. 9. 기준 37개의 기업만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고 있어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적은 상황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제고하고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	2021-06-0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 처리지원금의 부과 · 지급 등 자원순환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 법률 제17847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 이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021-06-11
특허청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식에 명기하고, 행정절차의 진행 경과를 보다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전자우편주소를 필수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며, 특허증 서식 및 휴대용 특허증 서식 등의 외국어 표현을 국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변경하도록 함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민간의 전자서명 수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자서명법」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거나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 · 인증서의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021-06-10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을 내용으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업무 효율성 제고(안 제19조의7 제4항), ② 폐기물 수출자의 정보 입력기간 조정(안 별표 2), ③ 과태료 상한액 상향(100→200만원)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별 과태료 금액 조정(안 별표 3), ④ 보증금 또는 보험금의 사용 명확화(안 별표 4 제4호) 등이 있음 ※ 의견 제시기간 :7/19(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생활폐기물과)로 제출	2021-06-07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저금리 기조로 인해 시세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토지 및 시설의 임대요율을 현실화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 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시 법 제 22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요청자와 사업 시행 예정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시행 예정자의 사업계획서 및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여 실수요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정비(안 제16조의2~제16조의4), ②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임대요율 현실화(안 제25조), ③ 행정처분의 기준 합리화(안 별표 2) 등이 있음 ※ 의견 제시기간 :7/19(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첨단물류과)로 제출	2021-06-0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금융위원회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등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5.21.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 주요 내용은 ①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 추천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②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 운영을 위한 필요사항 정비(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③ 금융회사 출연제도 관련 세부기준 마련 (안 제42조, 별표1), ④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대상 추가(안 제55조 제1항제16호) 등이 있음 ※ 의견 제시기간 : 7/19(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로 제출	2021-06-09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정무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재비·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의 증액사유로 수급사업자의 추가작업을 명시하며, 원사업자가 추후 계약을 조건으로 감액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시기·내용 및 하도급대금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함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액한 하도급 대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항·제11항, 제4조제3항 및 제13조 제11항 신설 등)	2021-06-0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 「<u>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u>」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통일하는 등 과징금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5호, 제18조제2항 및 제64조의2 신설 등)	2021-06-08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	• 「<u>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등 10인)</u>」 구글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는 인앱결제를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2021년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임 이로 인해 콘텐츠 사업자의 선택권 침해 및 경영악화 문제가 우려되고 있으며 결제 수수료 확대 정책은 모바일 콘텐츠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도서정가제가 시행 중인 출판업의 경우 전자 출판물의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 등으로 인해 동일 출판물의 동일 가격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모호해 현행법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2021-06-0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농림 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 「<u>항만안전특별법안(맹성규의원 등 40인)</u>」 항만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 등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점검하도록 하며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를 예외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의 항만안전관리계획, 해수부가 평가한 사업자의 안전관리수준, 항만현장 점검 현황,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조사 결과 등을 정보 공개하도록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은 항만운송사업과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시킴으로써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② 항만운송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항만운송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는 등의 기본 의무 및 안전확보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③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조직을 두도록 함(안 제8조) ④ 항만운송 참여자에게 항만운송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⑤ 항만운송 참여자로 하여금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 ⑥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감독관 및 안전확인요원을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항만운송 참여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하게 함(안 제14조) ⑦ 항만운송 참여자가 항만운송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17조) ⑧ 항만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항만운송 참여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⑨ 항만운송 참여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4조)	2021-06-0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3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낮아진 취업률과 경기 침체의 악조건으로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창업률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 1인 창조기업 정의를 신설하고,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에 있어서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신설 등)	2021-06-07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절차를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폐업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신고 내용에 대한 심의 및 조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절차를 규정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체제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5항, 제14조의2제6항 신설) ②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항 · 제8항, 제27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3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③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함(안 제21조의2 신설) ④ 폐업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제3호 및 제5항제1호의2 신설)	2021-06-0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장에서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부 보고 등으로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등 현장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발견하거나 그 근로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안전하게 구조·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	2021-06-08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6/18(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43호 발간	
국회도서관	6/15(화) ~ 6/17(목)	제13차 APLAP(아·태의회 도서관 협회) 회의 참가	온라인 화상회의
	6/15(화)	현안 입법 알리기 발간 -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법적 근거 마련	
	6/15(화)	최신 외국 입법정보 발간 - EU 플라스틱 규제 관련 입법례	
국회 예산정책처	6/16(수)	「경기조정 재정수지와 잠재성장률 추정」 발간	
국회 입법조사처	6/14(월) 14:00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 지원(이용우 의원실) - 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	온라인 생중계
국회 미래연구원	6/16(수) 11:50~13:00	의원실 공동 세미나 개최 - 입법의 현재와 미래	

[별첨1] 제388회국회(6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기재위	6/15(화) 10:00	전체회의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행안위	6/16(수) 10:30	전체회의	법안상정(지방세법 등)
	6/16(수) 11:00	공청회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6/16(수) 오후	법안심사1소위	법안심사(지방세법, 공휴일법 등) / 법안의결
농해수위	6/16(수) 14:00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	임업직접지불제 도입 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법안심사
산자위	6/16(수) 14:00	중소벤처기업소위	법안심사
보복위	6/16(수) 10:00	전체회의	법안심사
국토위	6/14(월) 10:00	교통법안심사소위	법안심사
	6/15(화) 10:00	소위	미정
	6/18(금) 미정	전체회의	미정

※ 위원회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14(월) 10:00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남인순, 박찬대, 배진교, 서동용 의원실 외	이룸센터 이룸홀
6/15(화) 10:00	(긴급좌담회) 대우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	민형배, 이정문, 서일준, 배진교 의원실 외	이룸센터 이룸홀
6/15(화) 14:30	녹색성장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입법토론회	임이자 의원실	유튜브 생중계
6/17(목) 14:00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준비,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시 장의 변화	박용진 의원실	How's 카페 여의도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희훈 소속변호사 | T. 02-316-7917 |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